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328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9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4.82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4. 2. 8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 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현정

별지